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. 11. 13 선고 2018가단10525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
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규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2019. 9. 25.

판결 선고2019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3/13 지분, 피고 C, D, E, F은 각 2/13 지분에 관하여 2018. 12. 17.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(자백간주 판결)

판사김희진

별지